



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

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

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란?

원인자 불명·부존재·무자격 또는 배상책임한도 초과사고에 대하여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

환경오염피해

환경시설*의 설치·운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 (다만,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 제외)

*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규정된 환경오염 유발시설
ex) 대기시설, 수질시설, 토양시설, 폐기물시설, 화학물질 취급시설, 해양시설 등 10종의 시설

대상 환경시설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
-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
-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
-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
- 「토양환경보전법」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
-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
-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른 해양시설
-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소음·진동배출시설
-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

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



구제급여 종류

| | |
|---------|---|
| 의료비 |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급 |
| 요양생활수당 |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·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-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 |
| 장의비 |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|
| 유족보상비 |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,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|
| 재산피해보상비 |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 |

지급기준 (19년 현재)

| 구분 | 요양생활수당 | 장의비 | 유족보상비 | 재산피해보상비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지급기준 | 피해등급*에 따라 차등 | 2인가족 중위소득의 897/1000 | 피해등급*에 따라 차등 |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|

* 피해등급 : 1급 ~ 10급, 피해등급 판정기준 : 산업재해 판정기준에 준함

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제도

환경부장관이 구성한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번호인단에서 환경오염피해에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

■ 지원 내용

- 법률자문
- 소송서류 검토
-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지원(일부 한정)

■ 지원대상

저소득층, 고령자, 장애인,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, 새터민, 국가보훈대상자, 기타

■ 신청방법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소송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

신청 및 접수

환경오염 피해인정신청



신청대상자

환경시설*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자

*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적용대상)

신청서류

구제급여

▶ 공통서류

- 구제급여 신청서
- 환경오염피해 원인(환경시설)에 관한 서류
- 거주 및 직업이력 입증 자료
- 민법 등에서 구제급여 받은 서류

▶ 구제급여별 제출서류

| 종류 | 제출서류명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료비 | 진단서, 검사서류 등 |
| 요양생활수당 | 장해진단서 등 |
| 장의비 | 사망진단서,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|
| 유족보상비 |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|
| 재산피해보상비 | 재산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|

소송지원

▶ 공통서류

- 소송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관련내용 증빙용 첨부서류(소송지원 대상 취약계층 증명서류, 환경오염피해 관련 피해배상 청구의사 증명서류, 피해사실 증명 및 환경오염 원인 제공 추정 시설에 관한 서류 등)

접수처

- 우편 및 방문 신청 (우)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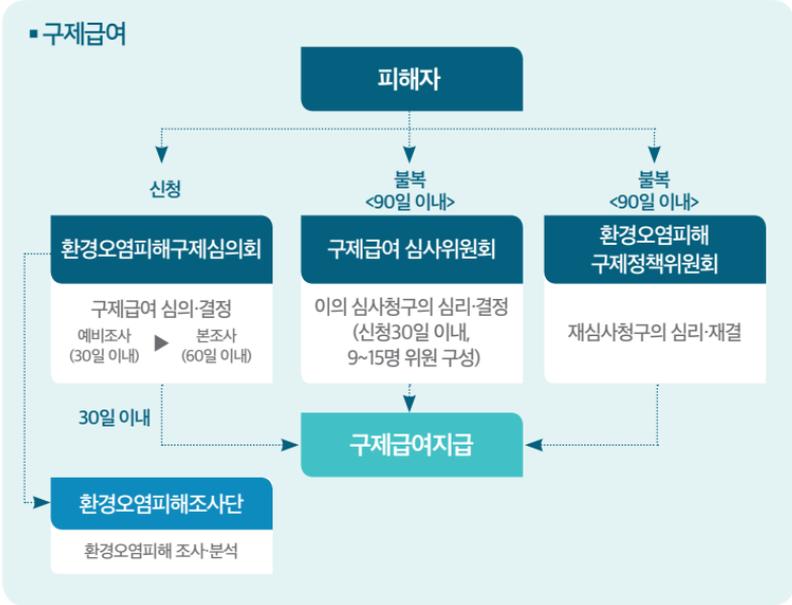
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팀

환경오염피해구제 진행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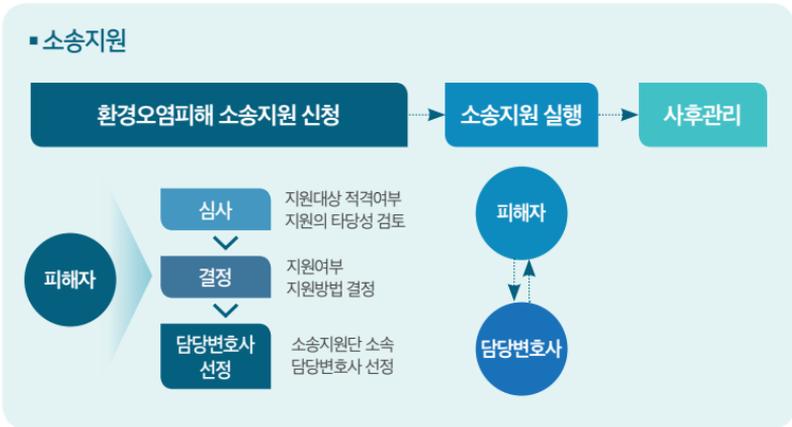


진행절차

■ 구제급여



■ 소송지원



안내 및 문의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팀

전화_ 02-2284-1850

홈페이지_ www.keiti.re.kr/env/relief_00.html